

2025년도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4차 공고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혁신기술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95억원('25년 70억원, '26년 25억원)
 - ※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2개년 연속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게 탄소혁신기술 설비 설치비 지원
 - 아래의 조건이 성립하는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0,000tCO₂eq 이상인 혁신기술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협약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설치 완료 후 정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
- 혁신기술설비의 운영계획 및 실적자료 제출에 동의하는 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해서 이미 동일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지원설비

-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에 해당하는 탄소혁신기술 설비

□ 지원범위

- 사업별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로 연간 최대 50억원, 2년간 지원
 - * 보조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공공기관·학교·병원 50%, 대기업 30%
- 업체 기업구분은 다음과 같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해당 혁신기술 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계측설비는 지원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이 인정한 필수 계측설비(신규·교체)에 한해 지원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3. 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별 세부내용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업체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사전검토	운영기관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업체 평가·선정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에게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사항 송부 -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원가계산서 제출 - 협약체결(서면, 대면, 생략가능) - 지원업체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착수신고	지원업체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입찰·계약 자가점검표 제출 - 선급금 신청(보조금의 70% 이내)
↓		
착수검토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착수신고서, 계약내역, 자가점검표 검토 - 보조금(선급금) 지급
↓		
운영 계획 보고서 제출	지원업체	- 착수 이후 반기별 운영 계획 보고서* 제출 *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감축량, 제품생산량,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비용 등) 등 내용을 포함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 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보조금 정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는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확인, 지원업체에게 정산 결과 통보
↓		
사후관리(3년)	지원업체	-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반기별 운영(실적)보고서* 제출 *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감축량, 제품생산량,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비용 등) 등 내용 포함
↓		
설비현황보고(2년)	지원업체	- 사후관리 기간 이후 설비 처분제한* 기간동안 설비 현황(지원설비 사진 등)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설비 처분제한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5.8.25.(월) ~ 2025.9.26.(금) 16:00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단위) 업체의 기술군 별로 각각 신청
 - (신청서 작성)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한글, Excel)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사업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 ⑥ 공모명 선택(2025년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 4차 공고)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 제출] 클릭

5. 선정 및 평가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사업 평가·심의 → 협약 체결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평가·심의	협약 체결
사업신청서 접수	감축량 산정, 사후관리계획 등 검토	심의위원회 평가, 지원업체 선정	지원사업 협약 체결
(신청업체)	(공단)	(공단)	(공단·지원업체)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지침 '[부록2] 사업신청서 평가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효과·감축률, 기업규모, 설비군, 사업계획 및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 운영데이터 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 예산의 범위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6. 유의사항

①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전 계약체결 불가**
 - ☑ 지원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 체결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교부 변경·취소
- ▶ **견적서 제출**
 - ☑ 신청설비에 대해 계약 건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 가격으로 제출(증빙서류 첨부)
- ▶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
 - ☑ 사업 전,후 배출량 산정 방식(활동자료, 변수, 배출계수 등) 구체적 제시(명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 **원가계산서 제출**
 - ☑ 협약 체결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필요(소요 비용 업체 자부담)

② 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

- ▶ **계약 종류(물품, 용역 및 공사)에 따라 기준 금액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이용 또는 조달청 위탁 의무를 가짐**
- ▶ **사업계획 변경내용 발생 시, 신청 必 → 사안에 따라, 운영기관의 확정/승인 실시**
 - ☑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설비내역, 금액, 사업기간, 설치위치 등)이 생겼을 경우
 - ☑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30% 이상 변경할 경우
 - ☑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경우
- ▶ **사업 착수 이후부터 사업종료 후 3년까지 혁신기술설비 운영 계획·실적 보고서를 반기별로 운영기관에 제출**
 - ☑ 착수 이후 반기별로 혁신기술설비 운영 계획보고서 제출
 - ☑ 준공 이후 반기별로 혁신기술설비 운영 실적보고서 제출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제품생산량, 지원설비 운영비(유지보수비, 인건비, 에너지 사용량·비용 등) 등의 내용을 포함
- ▶ **설치 설비에 대해 3년간 사후관리(감축실적보고서) 필수**
 - ☑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감축실적보고서 매년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 예상감축량 대비 감축량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 필요(사진 포함)
- ▶ **설비 설치 처분의 제한**
 - ☑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축설비를 타인에게 양도, 처분하거나, 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제출 후 승인 필요
 - ☑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가능

③ 교 부 조 건

▶ 지원업체 선정

- ☑ 이 지침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서는 안 됨
- ☑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서는 안 됨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안 됨
-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됨

▶ 보조금 집행

- ☑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됨
- ☑ 이 지침에서 정하는 입찰·계약 관련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 착수신고서 검토 결과를 통지받기 이전에 지원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안 됨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 ☑ 보조금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 근거한 운영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 ☑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 보조금 집행시 지원업체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거래하여서는 안 됨
- ☑ 보조사업 등에 관하여 부정, 태만, 그 밖의 부적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

-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지원설비를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폐기처분을 하여서는 안 됨
- ☑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안 됨
-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

▶ 규정 준수

- ☑ 교부조건, 보조금 관계 법령, 이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차기 사업 참여시 감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 운영기관은 필요시 상기 교부 조건 외의 교부 조건을 추가 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따름.
-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업체의 혁신기술설비 운영데이터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8. 문의처

- (사업문의) 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032-590-5612,9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 ※ 별첨 1 : 지원설비 목록 1부.
- 별첨 2 :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1부.
- 별첨 3 : 지원업체 계약 기준 1부. 끝.

[별첨 1] 지원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예시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④ 탄소포집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⑤ 연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 예시 보일러, 버너, 로, 건조설비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
	⑥ 물질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低GWP 물질을 사용하는 설비(기기) ※ 제품군별 사용 제한 GWP를 만족하는 물질로 변경하는 경우
	⑦ 불소가스 저감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⑧ 기타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
	전력 · 연료 절감 설비	⑨ 인버터
⑩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⑪ 고효율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예시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등 ※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⑫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첨1-1」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혁신기술설비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확인 가능한 설비
⑬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별첨 1-1]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

분야	기술 목록	분야	기술 목록
태양광	초고효율 태양전지	철강	고로 연·원료 대체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시스템		전로 연·원료 대체
풍력	폐태양광 재활용 재사용	석유화학	철강산업 하공정 무탄소 연료 전소
	해상풍력 부유체 시스템		수소환원제철
	해상풍력 설치·시공		탄소 저감형 전기로
	수직축 부유식 풍력발전		철강 부산물 재자원화
수소	초대형 풍력 터빈	시멘트	바이오 PEF
	해상풍력발전 운영·관리		바이오폴리올
	기체수소 저장·운송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해외 암모니아·수소 대용량 저장·운송		연료유·부산물 기초화학 원료 전환
	알칼라인 수전해		부생가스 고부가 전환
	PEM 수전해		바이오나프타·올레핀
	차세대 수전해		폐플라스틱 용매 추출
	액체수소 저장·운송		폐플라스틱 해중합
	차세대 해외수소 저장·운송		폐플라스틱 가스화
	액체수소 인수기지		저에너지 분리·소재 공정
전력 저장	액체수소 운송선	산업일반	전기 가열로 NCC 시스템
	수소 전용 배관망		무탄소 연료 NCC 공정
	단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플랜트 전환
	사용후 배터리 ESS 시스템		폐플라스틱 열분해
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저에너지 반응 공정
	분산자원 및 유연자원 통합운영		혼합재 함량 증대
에너지 통합 시스템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수소	비탄산염 원료 대체
	실시간 전력거래 플랫폼		순환자원 연료 대체
건축	산업용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원자력	신규 혼합재 제조
	복합에너지시스템		저탄소 신열원 활용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친환경 냉매
	고성능·다가능 외피		공정가스 대체
CCUS	건물에너지 관리·제어·데이터 활용	수소	산업공정용 수소·암모니아 활용
	건물·설비 전기화·고효율화		전동기·전력변환기 효율화
	건물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융합시스템		그린데이터센터
	분리막 포집		탄소배출 저감 효과 모니터링
	화학적 전환		공정가스 처리
	광물 탄산화		이차전지 셀 고도화
	습식 포집		이차전지 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포집		연료전지 시스템 고도화
	저장소 탐사·평가·선정		전기구동시스템 성능 향상
	저장 시설·설비 설계·구축		전력변환장치 고도화
선박	저장소 CO2 주입·운영	수소	유선충전 고속화
	CO2 저장 모니터링		수소차용 수소저장시스템
	건식 포집		수소충전소
	생물학적 전환		무선충전 대용량화
환경	탄소중립 내연기관	수소	수소혼소 가스터빈
	선박용 연료전지·배터리 시스템		고효율 연료전지 열병합
	연료 후처리 및 에너지 효율향상		수소전소 가스터빈
환경	선박 전기추진 시스템	수소	석탄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		초고효율 연료전지 복합발전
	리뉴어블 플라스틱		소형모듈원자로(SMR)
환경	국토공간 유형별 탄소 흡수 증진·관리	원자력	선진 원자력 시스템
	금속자원 회수		원자력 폐기물 관리

[별첨 2] 사업신청서 평가기준(안)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①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 ₂ /년) ÷ 설비투자비(억원)	감축률 감축효과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400 이상	50	47	44	41	38	
	300 이상	47	44	41	38	35	
	②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 ₂ /년) - 사업 후 배출량(tCO ₂ /년)} ÷ 사업 전 배출량(tCO ₂ /년) × 100	200 이상	44	41	38	35	32
		100 이상	41	38	35	32	29
		100 미만	38	35	32	29	26
③ 기업규모별 점수(10)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10	7	4	1		
④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한 설비별 점수(10)		100대 핵심 기술설비	탄소무배출 설비	공정 설비	전력·연료 절감설비		
		10	7	4	1		
⑤ 사업계획의 타당성(10) - 목적, 기술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연차별 사업비 산정, 자원조달 계획의 명확성		10	8	6	4	2	
⑥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 산정 근거 증빙자료의 적정성		10	8	6	4	2	
⑦ 기술의 혁신성 및 실현가능성(5) - 해당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 해당 기술의 실현가능성		5	4	3	2	1	
⑧ 운영데이터 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운영데이터 관리·제출 계획		5	4	3	2	1	

[별첨 3] 지원업체 계약 기준

-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구 분		자체조달*	중앙조달**
물품, 용역	○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기 타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자체조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다만,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공사는 '고난도 공종 및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조달청에서의 검토 등이 어려워 자체조달 방식으로 계약 가능(사업별로 입찰 시 조달청 확인 필요)

-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원업체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준용
 - 계약의 방법(법 제7조 제1항)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시행령 제21조)
 -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23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6조)
 -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시행령 제30조)
 - 입찰공고의 시기(시행령 제35조)
 - 입찰공고의 내용(시행령 제36조)
- 지원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 원칙. 다만,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 전기공사,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 체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절차 우회 금지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준용
 - 보조금 집행시 지원업체의 임직원[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 불가
 - 지침에서 규정하는 입찰계약 준수사항을 사전점검 하여야 하며 착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입찰계약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